

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11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직속기관(상하수도사업소)의 주소를 바르게 수정하고,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를 위해 승인된 동계올림픽추진단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상하수도사업소 주소 변경 : 군청길 77 → 후평길 74(안 제11조)

나.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 : 2016년 12월 31일까지(부칙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 :2015. 9. 11. ~ 10. 1.(의견 없음)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: 저촉사항 없음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군청길 77”을 “후평길 74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기구 존속기한) 한시기구인 동계올림픽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설치) ① (생략)</p> <p>② 사업소의 위치는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<u>군청길 77</u>에 둔다.</p>	<p>제11조(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u>후평길 74</u>-----</p>

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평창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자구 수정에 의한 개정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이 수반되지 않으며,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로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 추계서 제외 대상임.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자치행정과장 장동기
연락처	(033) 330 - 2210

관계 법령 발췌

지방자치법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~⑥(생략)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13조 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(이하생략)

②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(생략)

④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